

#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의안 번호	2017~129
----------	----------

제출일자 : 2017. 10. .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 1] 용양권역 119안전센터 건립 부지매입

### 1. 제안이유

2017년 읍·면 순방 시 북부권역 119안전센터 주민건의 지원요구 및 거창소방서의 협조요청에 따른 용양권역 119안전센터 건립 부지 확보를 위함.

### 2. 주요내용

#### 가. 취득개요

- 위 치: 거창군 용양면 노현리 112, 113, 114번지
- 사업기간: 2017.7. ~ 12.
- 매입면적: 2,076㎡ (토지소유자: 조가매)
- 매 입 비: 300백만원(군비 300백만원)
- 주요기능: 용양면 119안전센터 건립
  - 화재의 초기대응과 응급환자의 적기 구조·구급
  - 소방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로 군민 생명과 재산 보호

#### 나. 취득재산의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분	재산 종별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사유	비고
		소 재 지	지목	면 적				
계		3필지		2,076	88,370			
취득	토지	용양면 노현리 112	답	349	15,077	2017	용양권역 119안전센터 건립	
		용양면 노현리 113	답	1,094	45,948			
		용양면 노현리 114	답	633	27,345			

#### 다. 추진경과

- 2017.2.2.: 용양권역 119안전센터 건립부지 지원 검토 보고
  - 용양면 소재지 일원 약 990m<sup>2</sup> / 100백만원 정도
- 2017.3.27.: 용양면 부지 추천
  - 3개부지: 죽림리 304(군유지), 노현리 490-1(도 교육감) 노현리 112 외 2필지(사유지)
- 2017.4.19.: 관련부서(도시건축과) 검토
  - 2개 부지 적합 의견(노현리 490-1, 노현리 112 외)
- 2017.6.15.: 부지 현장 확인(군·소방서·용양면)
- 2017.6.23.: 용양권역 119안전센터 건립 부지매입 계획 보고
  - 매입대상 부지 확정: 용양면 노현리 112, 113, 114 / 2,076m<sup>2</sup>
  - ※ 대상지 선정 사유: 용양면(주민 등), 거창소방서 현장의견 반영

#### 라. 향후계획

- 2017.11. ~ 12.: 토지 보상 등 부지 매입
- 2018.1. ~ 12.: 대부계약 및 119안전센터 건립(거창소방서)

#### 마. 기대효과

- 소방사각지역해소 및 소방 골든타임 확보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

###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 가. 위치도



##### 나. 현장사진



## ② 거창 하천환경교육센터 조성사업 부지매입

### 1. 제안이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실시한 2017년 특별주민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농·특산물 판매 및 친환경 교육을 위한 하천환경교육센터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지매입을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취득개요

- 사업기간: 2017.1. ~ 2019.12.(3년)
- 사업비: 290백만원
- 사업규모: 1,451㎡
- 사업내용: 거창 하천환경교육센터 조성사업

#### 나. 취득재산의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분	재산종별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재산소유자
		소재지	지목	면적				
계		3필지		1,451	290,200			
취득	토지	거창읍 가지리 188-1	전	897	179,400	2017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조성	조순감
		거창읍 가지리 188-2	전	378	75,600	2017		조순감
		거창읍 가지리 187	답	176	35,200	2017		형미생

#### 다. 추진경과

- 공모사업 신청(국농소마을회(강과사람)→거창군→낙동강청): 2016.9.19.
- 공모사업 선정(낙동강유역환경청): 2016.12.19.
- 국농소마을회(강과사람) 사업부지 선정 통보: 2017.9.
- 토지소유자 감정평가 승낙 및 사전협의 완료: 2017.9.
- 감정평가 의뢰(진행 중): 2017.10.

## 라. 향후계획

- 2017.11.~12.: 토지보상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
- 2018년: 사업착공 및 사업추진
- 2019년: 사업준공 및 하천환경교육센터 운영

## 마. 기대효과

-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 환경체험 교육장으로서의 역할과 기능 제고

##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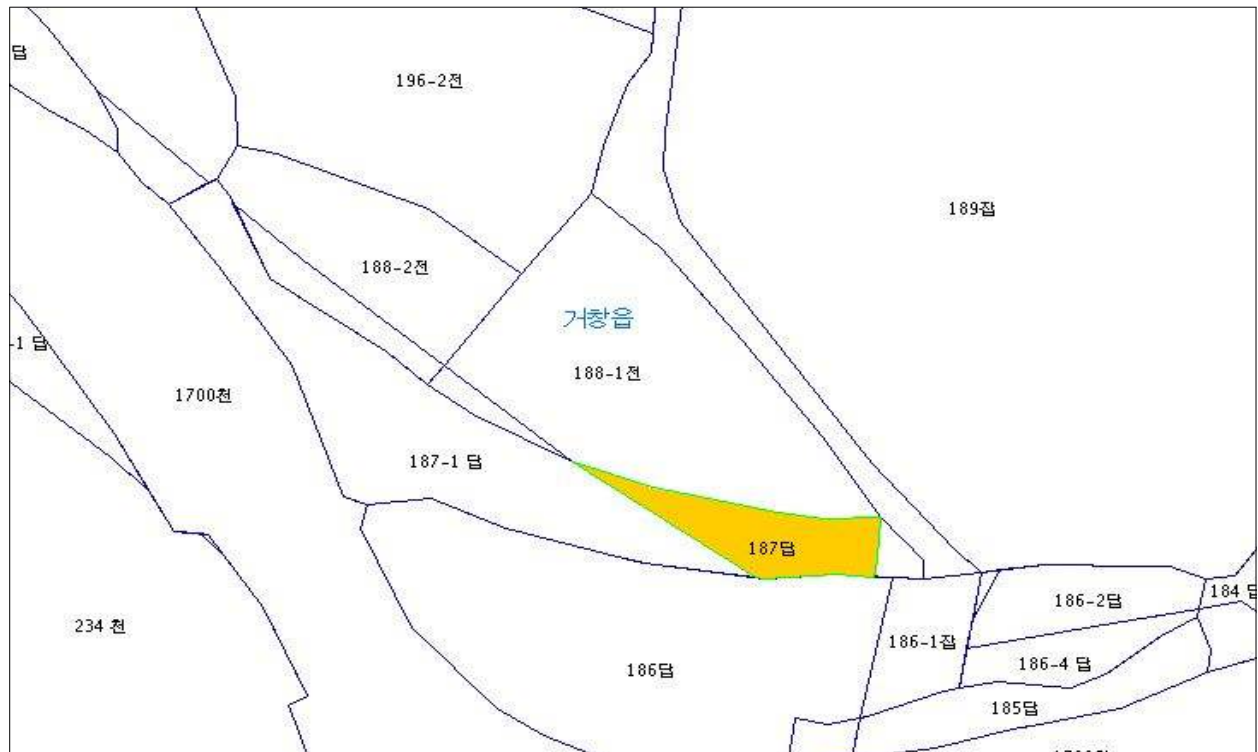
### 가. 위성사진



## 나. 현장사진



## 다. 지적도



### ③ 공유지 매각

#### 1. 제안이유

행정적 보존 필요성이 적은 공유재산의 매각으로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무허가 축사(양돈장) 적법화를 통해 축산농가와 상생하고자 함.

#### 2. 주요내용관내

##### 가. 처분개요

- 위 치: 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1477-14, 1477-15
- 처분면적: 3,300㎡
- 기준가격: 11,710천원

##### 나. 처분재산 세부내용

(단위: ㎡, 천원)

구분	재산종별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소재지	지목	면적	
계		2필지		3,300	11,710
매각	토지	신원면 덕산리 1477-14	목장용지	2,411	8,607
매각	토지	신원면 덕산리 1477-15	목장용지	889	3,103

##### 다. 추진경과

- 1997.~ : 양돈업 시작.
- 2011.11.: 공유림 사용허가계약 체결(산림과)
- 2012.3.: 지목변경으로 공유재산 변경계약
  - ※ 임야⇒목장용지 지목 변경 후 산림과에서 농업축산과로 행정재산 이관
  - ※ 사용기간: 2019.10.31.까지
- 2017.9.: 경남도 공유재산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조치 지시
- 2017.10.: 공유재산 특정감사 조치에 따른 공유지 용도폐지 및 매각 계획 보고

## 라. 향후계획

- 2017.12.: 토지매각(일반경쟁입찰)

## 마. 기대효과

- 무허가 축사로 인하여 행정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농가에 적법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축산업계의 어려움 해소.  
※ 2018.3.24.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종료 예정으로 적법화 불가 시 사용중지폐쇄명령이 내려져 축산업 기반이 흔들릴 우려가 있음.

##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

##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 ④ 수승대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사업(변경)

##### 1. 제안이유

위천면 장기리 190번지 외 1필지를 수승대권역(복상, 위천, 마리)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설사업 부지로 매입 추진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매도의사 철회로 위천면 장기리 269-9번지(1필지)로 매입부지 변경하고자함.

##### 2. 취득재산의 표시

###### 가. 취득개요

- 사업기간: 2017.1. ~ 2018.12.(2년)
- 사업비: 1,900백만원(국비 500, 도비150, 군비1,250)
- 사업규모: 4,066㎡(농기계보관창고 1동, 운영사무실 1동)
- 사업내용: 수승대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 부지 매입

######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 ○ 당 초

(단위:㎡, 천원)

구분	재산종별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재산소유자
		소재지	지목	면적				
계		2필지			50,539			
취득	토지	위천면 장기리 190	답	1,679	24,681	2017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부지 매입	강채희
		위천면 장기리 191	답	1,759	25,857			강채희

###### ○ 변 경

(단위:㎡, 천원)

구분	재산종별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재산소유자
		소재지	지목	면적				
계		1필지			65,056			
취득	토지	위천면 장기리 269-9	답	4,066	65,056	2017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부지 매입	강승희

###### 다. 추진경과

- 2016.11.9.: 2016년 제3회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 2016.12.9.: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결

- 2017.2.: 신설에 따른 임대농기계 수요조사 실시
- 2017.3.: 2018년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사업 신청(농축산식품부)
- 2017.9.: 수송대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 주민설명회 개최

#### 라. 향후계획

- 2017.12.: 토지매입
- 2018.12.: 건축물 신축 및 임대사업소 개소

#### 마. 기대효과

- 농업인의 임대농기계 이용으로 영농경영비 절감
- 임대농기계사업 확대로 농번기 원활한 임대사업 추진

### 3. 관련법규 및 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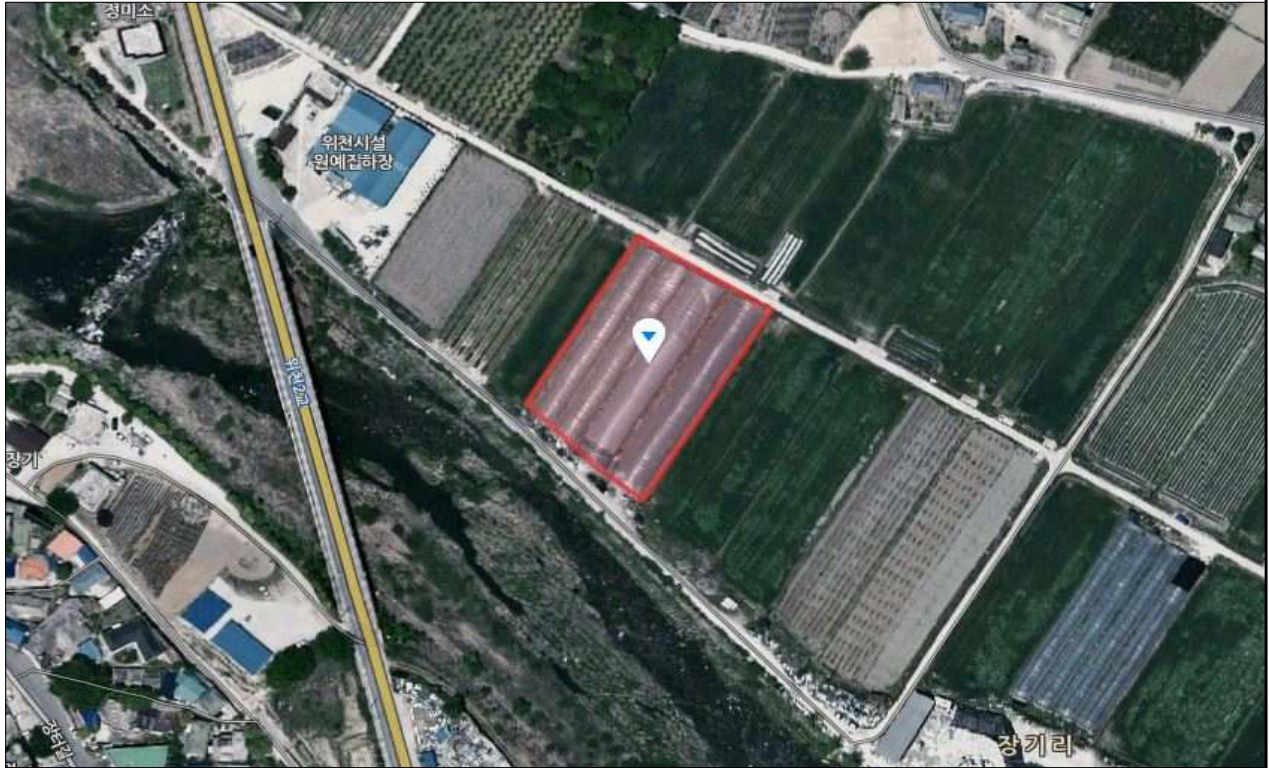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 가. 위치도



## 나. 위성사진



## 다. 현장사진



## 5. 치매안심센터 건립사업(변경)

### 1. 제안이유

거창읍 김천리 공유지(237-16)인근 237-9번지를 치매안심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을 추진하였으나, 토지소유자와 영업세입자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부지를 현 보건소 내로 변경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취득개요

- 위 치: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079
- 사업기간: 2017.8. ~ 2018.6.
- 사업규모: 500㎡ (안심센터, 쉼터, 가족카페)
- 사 업 비: 1,377백만원(국·도비726, 군비651)

(단위:천원)

구분	계	국비	도비	군비	비고
당 초	1,191,000	600,000	75,000	516,000	
변경 후	1,377,320	645,154	80,644	651,522	
증액금액	186,320	45,154	5,644	135,522	

####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 ○ 당 초

(단위:㎡, 천원)

재산종별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재산소유자
	소재지	지목	면적				
토지	거창읍 김천리 237-9	대	331	104,265	2017	거창군 치매안심센터부지	이귀순
건물	거창읍 김천리 237-9, 237-16	대	530	991,000	2018	거창군 치매안심센터건립	거창군수

##### ○ 변경

(단위:㎡, 천원)

재산종별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재산소유자
	소재지	지목	면적				
건물	거창읍 송정리 332-3	대지	500	2,754	2018	거창군 치매안심센터건립	거창군수

## 다. 추진경과

- 2017.6.12.: 치매안심센터 건립 추진계획 수립
- 2017.6.21.: 적합부지 검토 및 소유자 면담
- 2017.7.28.: 관련부서(도시건축과) 검토
  - 2개 부지 적합 의견(김천리 237-9, 237-16)
- 2017.7.31.: 거창군 치매지원 센터 건립 부지매입 계획 보고
  - 매입대상 부지 확정: 거창읍 김천리 237-9 /331㎡
  - ※ 대상지 선정 사유: 균유지가 협소하여 인접부지 반영
- 2017.8.11.: 2017 제5회 거창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2017.9.13.: 제227차 거창군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 가결
- 2017.10.17.: 토지소유자 매도의사 철회 요청
- 2017.10.17.: 보건소 증축가능 여부 전문가 자문(증축가능)

## 라. 향후계획

- 2017.11.: 실시설계 용역 발주
- 2018.1.: 계약 및 공사 발주
- 2018.7.: 치매안심센터 개소

## 마. 기대효과

- 치매관리 인프라 구축으로 환자와 가족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통합서비스 지원
- 낮시간 보호, 카페운영 등 경제활동 참여지원으로 사회경제적 부담 경감
- 보건소 내 설치로 주민접근성 및 사업연계 등 사업 효율성 증대

##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 가. 위성사진



##### 나. 현장사진-치매안심센터 건립예정지(현재 공용차량 주차장)



## 관 계 법 령(요약)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 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40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④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 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2015.12.10.)

제6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①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군수가 자문하기 위하여 거창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 및 영 제8조에 따른 행정재산·일반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행정재산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3.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4.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른 기부채납된 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갱신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처분
  4. 행정재산으로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의 재산에 대한 용도의 변경·폐지
  5. 법령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 및 무상대부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세운 후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